

#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 사 경 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3. 7.24(수) 평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13. 9. 10(화)

다. 상정일자 : 2013. 9. 10(회) 제19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 상정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도시주택과장)

-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 안전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였고, 강원도에서도 안전조직 개편지침이 통보되었으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전조직을 구성 운영하고자 함.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홍금숙)

- 본 조례는 교통약자에 대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은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임산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국가유공상이자 중 장애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이 되겠습니다.

-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의 운임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10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을 “65세이상의 대중교통이 이용이 어려운 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등 으로 범위를 너무 넓게하고 포괄적으로 하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상당수가 일반택시를 이용하는 이용객으로 제도시행시 이용객 감소로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는 일반운송사업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 조례가 확정되어 특별교통수단이 운행될 경우 이용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강원도내 특별교통수단 도입계획은 별첨과 같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평창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 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평창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및 운송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중 1명을 호선하여 부위

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부군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건설방재과장, 도시주택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군의원 2명

3. 장애인·노인·여성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분야별 각 2명

4.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이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담당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군의 여타 위원회 운영의 관례에 따른다.

제7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관리
3.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즉시 또는 예약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출발지에

서 목적지까지 승·하차를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이동지원센터는 제2항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자의 확인 후 지원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2.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3. 임산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4.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6. 국가유공상이자 중 장애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7.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현재의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③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리프트 또는 휠체어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

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주 여부와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인근 시·군까지로 할 수 있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이 관외로 운행하는 경우에도 1항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 단, 해당구간의 시외버스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군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 제13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3.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 선정 시 이용자에게 최대한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차량콜 시스템을 갖춘 법인·단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